

## 영국 Trustee Act 2000의 구성과 내용

정보신청기관 :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CB운영리스크관리부

### I. 서 설

영국의 신탁제도는 여러 가지 성문법령과 판례들로 규율되고 있다. 아래에서는 Trustee Act 2000의 내용을 중심으로 영국 신탁제도에 관하여 살펴본다.

#### 1. 영국의 신탁제도

신탁제도<sup>1)</sup>를 처음 발전시킨 영국은 오랫동안 신탁의 금융산업화를 추구하였다. 신탁제도가 산업혁명 및 자본주의와 결합하면서 크게 발전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영국의 신탁제도는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되었고, 그에 대한 적절한 규제도 마련되기 시작하였다.

영국의 신탁제도는 수탁자의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충실)의무를 바탕으로, 신뢰관계를 통해 유지된다. 보통법(Common Law)과 형평법(equity) 원칙에 따라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고, 신탁재산의 처분권을 가지는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유효하게 처분할 수도 있다. 형평법상 위탁자 또는 수익자는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모든 이익을 누릴 수 있으며,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신탁재산은 분리된다.<sup>2)</sup>

최근 영국의 신탁제도는 여러 가지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신탁제도에 대한 국제사회의 취급이 보다 현대화되고 있으며, 대륙법계 국가들과의 조화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헤이그 국제사법회의가 제정한 신탁의 준거법과 승인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Law Ap-



- 1) 영국에서는 중세시대에 봉건영주가 교회에 대한 일반인의 토지 기부 현상을 막는 과정에서 신탁제도가 고안되었다. 영주들은 기부를 가로막는 법을 제정하였고, 기부를 원하는 사람들은 직접적인 토지 기부 대신에 신뢰할 만한 자(수탁자)에게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받은 자가 그 토지로부터 나오는 수익을 기부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이것이 영국 신탁제도의 기원이다.
- 2) 따라서 수탁자가 파산하더라도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파산재산에 속하지 않고, 수탁자의 채권자가 신탁재산을 강제집행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또한 수탁자가 사망하더라도 신탁재산은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는다.

plicable to Trust and On their Regulation 1985)은 국제사회의 신탁제도에 대한 조화 및 통일화를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으며, 영국이 속한 유럽 전체의 유럽신탁원칙(Principles of European Trust Law) 제정도 그러한 예이다.

영국은 신탁제도의 국제적 통일화와 신탁제도의 금융화 발전 및 상거래 활성화 기능에 주목하면서 신탁제도를 변화시키고 있다. 2000년에 마련된 영국의 수탁자법(Trustee Act 2000)이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다. 이 법은 신탁관계에서 신탁재산을 이용하여 이익을 창출하는 기능을 하는 수탁자의 권한과 책임을 새롭게 정비하였다. 이 법을 통하여 기존의 신탁제도 관련 규범의 내용이 상당히 변화될 수밖에 없었고, 영국에서는 FSMA 2000(Financial Services and Market Act 2000) 제정 등 영국 금융제도 변화와 신탁제도의 변화가 함께 이루어지는 상황이 되었다.<sup>3)</sup>

## 2. Trustee Act 2000의 제정과 구성

영국의 신탁제도 관련법인 Trustee Act 2000은 2001년 2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이 법은 신탁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자(수탁자)가 신탁재산을 투자할 수 있는 방법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즉, 이 법은 기존의 신탁투자법(Trustee Investment Act 1961)의 내용을 상당부분 대체하면서, 기존법에 의하여 수탁자의 투자선택과 방법에 있어서 존재하던 많은 제한들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반면에 신탁재산의 안정과 보호를 위하여, 이 법은 수탁자가 투자결정에 관하여 특정 절차나 투자에 대한 정기적인 감독 등을 받도록 하는 내용도 함께 규정하였다.

Trustee Act 2000은 전체 6장 43개조의 본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개의 부칙(Schedule)이 포함되어 있다. 구체적인 조문 구성은 다음과 같다.

### Part I. The Duty of Care(관리의무)

1. The duty of care
2. Application of duty of care

### Part II. Investment(투자)

3. General power of investment
4. Standard investment criteria
5. Advice
6. Restriction or exclusion of this Part etc.
7. Existing trusts



3) 그러나 기본적으로 영국 내에서 수탁자로만 활동하는 자는 영국의 자본시장법인 FSMA 2000이 규정하는 규율대상에서 제외된다.

**Part III. Acquisition of Land(토지매수)**

- 8. Power to acquire freehold and leasehold land
- 9. Restriction or exclusion of this Part etc.
- 10. Existing trusts

**Part IV. Agents, nominees and custodians(중개인, 명의대리인과 관리인)**

***Agents***

- 11. Power to employ agents
- 12. Persons who may act as agents
- 13. Linked functions etc.
- 14. Terms of agency
- 15. Asset management: special restrictions

***Nominees and custodians***

- 16. Power to appoint nominees
- 17. Power to appoint custodians
- 18. Investment in bearer securities
- 19. Persons who may be appointed as nominees or custodians
- 20. Terms of appointment of nominees and custodians

***Review of and liability for agents, nominees and custodians etc.***

- 21. Application of sections 22 and 23
- 22. Review of agents, nominees and custodians etc.
- 23. Liability for agents, nominees and custodians etc.

***Supplementary***

- 24. Effect of trustees exceeding their powers
- 25. Sole trustees
- 26. Restriction or exclusion of this Part etc.
- 27. Existing trusts

**Part V. Remuneration(보수)**

- 28. Trustee's entitlement to payment under trust instrument
- 29. Remuneration of certain trustees
- 30. Remuneration of trustees of charitable trusts
- 31. Trustees' expenses
- 32. Remuneration and expenses of agents, nominees and custodians
- 33. Application

**Part VI. Miscellaneous and Supplementary(기타 부가사항)**

- 34. Power to insure
- 35. Personal representatives
- 36. Pension schemes
- 37. Authorised unit trusts
- 38. Common investment schemes for charities etc.
- 39. Interpretation
- 40. Minor and consequential amendments etc.
- 41. Power to amend other Acts
- 42. Commencement and extent
- 43. Short title

**Schedules(부칙)**

- Schedule 1 – Application of duty of care
- Schedule 2 – minor and consequential amendments
  - Part I – The Trustee Investments Act 1961 and the Charities Act 1993
  - Part II – Other Public General Acts
  - Part III – Measures
- Schedule 3 – Transitional provisions and savings
- Schedule 4 – Repeals
  - Part I – The Trustee Investments Act 1961 and the Charities Act 1993
  - Part II – Other repeals

**II. 주요 내용****1. 제1장 관리(충실)의무**

Trustee Act 2000 제1장 제1조는 수탁자에게 관리(충실)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즉 일반적으로 수탁자는 신탁자를 위하여 상황에 합당한 적절한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수탁자는 영업의 과정에서 상인으로서의 특별한 경험과 지식을 충분히 활용하여야 한다. 그러한

경험과 지식의 수준이란, 동종의 신탁자에게 일반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면 충분하다. 이러한 의무는 ‘성실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라 할 수 있는데, 부칙 제1조는 수탁자에게 적용해야 할 의무의 구체적인 상황들을 자세하게 열거하였다(제2조).

**2. 제2장 투자**

제2장은 수탁자의 신탁재산을 이용한 투자에

관한 것이다. 제3조 General Power of Investment(투자에 관한 일반적인 권한)는 수탁자의 신탁재산을 이용한 투자의 권한 내용을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기본적으로 수탁자는 자금의 원금회수 또는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투자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신탁자는 투자를 제한하는 특정한 문서계약을 통하여 이러한 수탁자의 투자를 제약한다.

이 법은 신탁자의 책임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있다. 즉, 신탁자는 항상 투자기준을 준수하고, 모든 종류의 투자는 각각에 합당한 적절한 감독 절차를 따라야 한다. 이러한 절차는 신탁자의 상황에 알맞은 수준의 것이어야 한다(제4조). 또한 특별한 예외를 제외하고는(제6조) 투자자는 각 투자기준을 준수하면서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자로부터 적절한 자문을 청취하면서 투자를 진행해야 한다(제5조). 전문가의 자문은 투자재산의 성격과 투자대상에 따라 달라진다.

이 규정들은 1961년 8월 3일 이전의 신탁자 권한에 대하여, 제6조 제1항 b의 목적에 비추어 투자권한을 일반적으로 제한하거나 배제시키는 것으로 취급할 수 없다. 즉 이 장의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신탁에 관하여<sup>4)</sup> 수탁자에게 일반적인 투자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취급한다(제7조).

### 3. 제3장 토지매수

수탁자는 영국 내의 토지를 투자의 목적이나

수익자의 점유로서 매수할 수 있다(제8조). 수탁자의 지위를 수행할 목적으로 이 규정에 따라 토지를 매수한 수탁자는 해당 토지에 관하여 완전한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토지매수와 관련하여 부여된 권한은 다른 관련 규범이나 신탁조치를 통하여 제한될 수도 있다(제9조). 또한 위와 같은 규범 내용은 점유된 토지에 관한 신탁이나 대학부동산법(Universities and College Estates Act 1925)이 적용되는 신탁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제10조).

### 4. 제4장 중개인, 명의대리인과 관리인

수탁자는 자신의 업무를 위하여 중개인 등을 고용하여 업무를 대신하도록 하면서 이를 감독할 수 있다(제11조). 여기서 말하는 하위업무란, 수탁자가 하는 결정을 수행하는 여러 가지 기능을 말한다. 이 경우 중개인의 수는 1명 이상일 수 있으나, 하나의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로 복수의 중개인을 동시에 둘 수 없다(제12조).

수탁자의 중개인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특정된 제한이나 업무범위를 준수해야 한다. 이러한 업무에 대하여는 토지신탁과 수탁자의 지정에 관한 법(Trust of Land and Appointment of Trustees Act 1996)을 적용하여 법률 사이의 충돌을 방지하였다(제13조).

수탁자는 중재인에게 일정한 조건을 붙여 그



4) Trustee Investment Act 1961 제3조 제2항의 적용을 받는 경우를 말한다.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업무권한을 박탈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조건이란, 중개인이 자신을 대체할 자를 임명하도록 허용하거나, 중개인이나 그 대체자의 수탁자나 수익자에 대한 책임을 제한하는 경우 또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상황에서 활동하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 등이다(제14조). 또한 수탁자는 특별히 서면 등으로 증명되는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의 자산관리업무를 타인이 대신할 수 없도록 할 수도 있다(제15조).

이 밖에, 수탁자는 필요한 경우 명의대리인과 관리인을 임명할 수 있다(제16조, 제17조). 제19조는 이러한 명의대리인과 관리인으로 임명될 수 있는 자의 요건을 규정하였다. 이에 따르면, 명의대리인과 관리인은 이러한 업무를 영업으로 하거나, 수탁자가 운영하는 회사에 속하거나, 법인으로 등록된 자이어야 한다. 이와 같은 명의대리인과 관리인의 임명에도 조건이 있을 수 있다(제20조).

수탁자가 중개인에게 권한을 부여하거나 명의대리인과 관리인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들을 감독할 권한을 가진다(제21조). 따라서 이들은 수탁자의 감독내용을 준수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수탁자가 그들의 행위에 개입할 수도 있다(제22조).<sup>5)</sup>

수탁자는 부칙에 따른 관리(충실)의무를 다하는 한 위의 중개인, 명의대리인, 관리인의 행위나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제23조).

## 5. 제5장 보수와 기타 부가사항

Trustee Act 2000은 수탁자의 보수에 관하여도 직접 규정을 두고 있다. 수탁자는 자신의 업무에 대한 대가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이 법에 의하여 이러한 금액을 관리의 대상이 되는 수탁재산에서도 충당할 수 있다(제28조). 물론 수탁자의 수탁재산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지출도 수탁재산에서 충당할 수 있다(제31조).

이 밖에도 이 법은 수탁자의 업무에 관한 규율을 위하여 각종 규정들을 추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이 법의 적용에 따라서 관련 법령의 개정이 불가피하여 그러한 변화를 나타내는 규정이 있으며(제41조), 이 법의 적용과 대상을 나타내는 조항(제42조), 용어정의와 해석에 관한 규정(제39조) 등도 있다.

## III. 결 어

### 1. 영국의 신탁제도 변화와 현실

영국의 신탁제도는 그 역사만큼 매우 복잡한 구조와 발전을 거듭하였다. 최근의 경향은 신탁



5) 수탁자의 '개입권'은 중개인, 명의대리인, 관리인에게 지시할 권한에서 시작될 수 있으나, 필요한 경우에는 권한부여나 임명을 철회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제도가 자본시장의 범주 내로 포섭되어 금융기관의 영업대상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과 연관이 깊다. 즉, 각종 신탁회사들은 영업과 이윤을 위하여 신탁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에 따라서 규제 모습도 변화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영국이 신탁제도를 탄생시킨 것은 사실이지만, 이후 대륙법계 국가들의 신탁제도 도입과 발전, 미국의 신탁제도 등도 다양하게 변화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신탁제도의 조화와 통합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영국 내에서도 이러한 최근의 현상을 받아들여, 수탁자의 업무범위와 권한, 대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를 담고 있는 Trustee Act 2000을 제정한 것이다.

## 2. Trustee Act 2000의 영향

이 법의 제정으로 기존 수탁자의 권한과 임무에 관한 규범들은 크고 작게 변화할 수밖에 없었다. 이 법에 직접 언급된 여러 관련법들 이외에도, Trustee Act 1925, Trustee Investment Act 1961 등 많은 규범들이 직접 영향을 받았다. 또

한 이 법이 잉글랜드와 웨일스에만 적용되었으므로, 스코틀랜드 등 영국의 다른 지역에서도 이와 유사한 입법 움직임이 있었다.<sup>6)</sup> 실제로 스코틀랜드에서는 2005년에 Charities and Trustee Investment (Scotland) Act 2005를 제정하였으며, 이 법은 2006년 4월에 발효되었다. 이 법에 의하여 영국 내에서 일반적으로 수탁자의 투자권한이 확장되었고, 업무활동에서도 여러 가지 자율성을 그 이전보다 더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는 영국의 신탁제도의 현황 및 자본시장 내에서의 활용가능성 등과 연결되어 있다.

신탁제도 관련 영국의 입법은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자본시장의 변화가 점차 Global Standard와 조화되려는 추세에 있고, 국내의 신탁제도 역시 금융권에서 보다 더 영업분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합치하는 국내입법을 기대한다.

**김 봉 철**

(해외입법조사위원, 한국외대 국제학부 교수)



6) 영국 내에서도 잉글랜드/웨일스와 스코틀랜드는 별도의 법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별도의 입법을 통하여 제도를 구현한다.